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6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6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5(목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김호성 과장(044-203-4380)	담 당 자	김도회 사무관(044-203-4382)

박진규 차관, 교보문고 찾아 방역관리 특별점검

▸ **7.30일부터 강화 시행된 "대규모점포 출입자 명부 작성" 과 관련하여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유통업계의 대처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**

□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월 6일(금) 10시 30분, **코로나19의 확산세 차단 및 안정**을 위해, **교보문고 광화문점**을 **방문**하여 **유통업계의 방역관리 상황**을 **점검**하고 **현장의견**을 **청취**하였다.

< 교보문고 방문 개요>

○ 일시 : '21. **8. 6(금), 10:30**
○ 장소 : **교보문고 광화문점**(종로구 세종로 119)
○ 참석 : **(정부)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, 김호성 유통물류과장
(지자체) 서울시 **종로구 정욱성 복지경제국장**, 일자리경제과장
(교보문고) 교보문고 김형면 본부장, 김명중 단장, 송수경 점장 등

○ 교보문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부 관리, 고객 휴게시설·독서방 운영 중지, 재택근무 확대, 소독(주4회 전체 매장 추가 실시) 등 **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**하고 있으며,

- 앞으로도 **방역 당국**에 **적극 협조**하여 방역관리에 **최선**을 **다하겠다**고 밝혔다.

□ 박진규 차관은 **교보문고의 방역상황**을 **점검하면서,**

❶ 고객과 접점에 있는 매장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**직원공용 휴게실·창고·구내식당·환기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·구역 관리도 중요함으로 철저한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다.**

❷ 또한, **지난주 금요일(7.30)**부터 **대규모점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출입자명부 관리는**

- **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**하고 **국민의 불안감 해소** 등의 **효과**로 **유통업계 영업에도 도움**이 될 것이라며, **고객 불편이 없도록** 잘 관리하여 **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당부**했다.

❸ 아울러, **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와 휴가 복귀 전 유증상 확인**으로 **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.**

❹ 끝으로, **오랜 방역조치로 모두가 지쳐**있고, **백신접종** 등으로 **자칫 방역 불감증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**, 국민 모두가 **방역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.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등 **방역 위기상황을 극복**하기 위하여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**특별점검 및 업계소통을 지속 추진**하고 있다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도회 사무관(☎ 044-203-43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행사 개요

□ **배 경 :**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, **7.30일**부터 **시행 중인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조치**와 연계하여, **대형유통 현장의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통해 확산세 안정에 최선**을 **당부**

□ **일 시 : '21. 8. 6(금) 10:30**

□ **장 소 : 교보문고 광화문점**(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9)

□ **참석자** ※ 코로나19 상황 고려 참석인원 최소화

○ **(정 부)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**, 김호성 유통물류과장

○ **(지자체)** 서울시 **종로구 정욱성 복지경제국장**

○ **(기 업) 교보문고 김형면 본부장,** 김명중 단장, 송수경 점장 등

□ **시간계획(35분)**

시 간	내 용	비 고
10:30~10:32 (2`)	▪ 회의 소개	산업부
10:32~10:45 (13`)	▪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황 설명 ▪ 방역 현장의견 청취	교보문고 참석자
10:45~10:50 (5`)	▪ 당부말씀	차관
10:50~11:05 (15`)	▪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	참석자

붙임2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(중대본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▪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▪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▪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▪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▪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▪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▪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▪중대본
기준	▪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	▪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▪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▪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
	▸전국: 500명 미만 ▸수도권: 250명 미만	▸전국: 500명 이상 ▸수도권: 250명 이상	▸전국: 1,000명 이상 ▸수도권: 500명 이상	▸전국: 2,000명 이상 ▸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▪방역수칙 준수	▪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▪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▪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▪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▪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▪50인 이상 행사 금지	▪행사 금지
집회	▪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▪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▪50인 이상 집회 금지	▪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1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유흥시설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 나이트 8㎡당 1명)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(클럽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 -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
	▪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(1~4단계)			
콜라텍 무도장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	▪시설면적 10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홀덤펍 홀덤게임장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 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2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식당 카페	▪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 (1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▪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(3~4단계)	
노래(코인) 연습장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4시이후 운영제한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목욕장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실내체육시설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체육도장, GX류 4m당 1명)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체육도장, GX류 6m당 1명) 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 -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	▪22시이후 운영제한
		▪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제한(권고)	▪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▪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▪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▪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▪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▪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	
방문판매 등을 위한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직접판매 홍보관				
3그룹 시설				
구분	**1단계**	**2단계**	**3단계**	**4단계**
학원	▪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▪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▪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	▪(관악기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			
	▪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			
영화관 공연장	▪좌석 띄우기없음	▪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		
		▪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	▪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독서실 스터디카페	▪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결혼식장	▪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▪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▪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▪친족만 허용
장례식장	▪빈소별 4㎡ 당 1명	▪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당1명	▪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1명	▪친족만 허용
이미용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놀이공원	▪입장인원 제한×	▪수용인원의 70%	▪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워터파크	▪입장인원 제한×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오락실 멀티방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상점 마트 백화점	▪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	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카지노 (내국인)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PC방	▪좌석 띄우기없음	▪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
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운영시간 제한×	▪22시이후 운영제한
기타 시설				
구분	**1단계**	**2단계**	**3단계**	**4단계**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▪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▪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▪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▪무관중 경기
	▪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▪수용인원의 50%	▪수용인원의 30%	▪수용인원의 20%	▪무관중 경기
박물관·미술관 과학관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
실외체육시설	▪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~4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 ▪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숙박시설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▪전 객실의 3/4운영	▪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▪전 객실의 2/3운영
파티룸 (공간 대여업)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		
도서관	▪수용인원의 70%	▪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
키즈카페	▪시설면적 4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전시회·박람회	▪시설면적 4㎡ 당 1명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마사지업소 안마소	▪시설면적 6㎡ 당 1명	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▪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▪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4단계)		
종교시설	▪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▪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▪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▪비대면
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▪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학교	▪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(1~2단계)		▪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▪원격수업
	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			